

문서번호	인사처-1643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2016.03.10.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이사장직무대행 방침 제 85호

★대리	팀장	인사처장	이사장직무대행	
협 조				

---

# 2016년 직원 표창계획

---

2016.

# 2016년 직원 표창 계획

공단 각 직무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직원을 발굴·표창함으로써 받을만한 사람이 상을 받는 포상문화를 정착시키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신명나게 일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고자 함.

## I 기본방향

- 성과중심의 포상 기조 유지 및 제도 정착
- 현장 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 포상
- 공단 경영목표 달성 및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역량 강화

### 2016년 주요 개선사항

- 정원 증가를 반영한 정기표창 규모 확대 : '15년 98명 → '16년 132명
- 현장 하위직급(8~9급)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 개선
  - 추천심사위원회 구분 운영 (1~7급 / 8~9급) ※ 직급별 현원을 반영한 표창인원 배분
- 공단 5대 경영목표 달성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표창제도 연계
  - 관련 수시표창 규모 확대·신설 및 유공직원 적극 추천 유도

## II 표창규모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정 기 표 창	계	98명 (현원 대비 4.5%)	132명 (현원 대비 5.3%)
	훈격별	· 시장 : 32개(노조 추천 13개 포함) · 이사장 : 66개(노조 추천 9개 포함)	· 시장 : 32개(노조 추천 13개 포함) · 이사장 : 100개(노조 추천 9개 포함)
	직군별	· 일반직 70, 서비스직 21, 공무직 7	· 일반직 91, 서비스직 25, 공무직 16

※ 현원 및 표창규모 : <'15년> 2,182명, 98개 → <'16년> 2,488명(증 14%), 132개(증 34.7%)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타 부서 주관 수시 표창	· 안전관리 수범 4개	· 안전관리 수범 4개
	· 기술분야 유공 4개	· 기술분야 유공 4개
	· 감사청렴 수범 15개	· 감사청렴 수범 20개(확대)
	· 사회공헌 유공 5개	· 사회공헌 유공 3개
		· 서비스 스타 4개(신설)
정년퇴직 유공	· 총 40명(서비스직) ※ 근속 10년 이상자 9명 시장표창 추천	· 총 80명(일반직 40, 서비스직 40) ※ 근속 10년 이상자 43명 시장표창 추천

※ 기타 유공 직원에 대해서는 각 부서 예산(포상금) 범위 내에서 수시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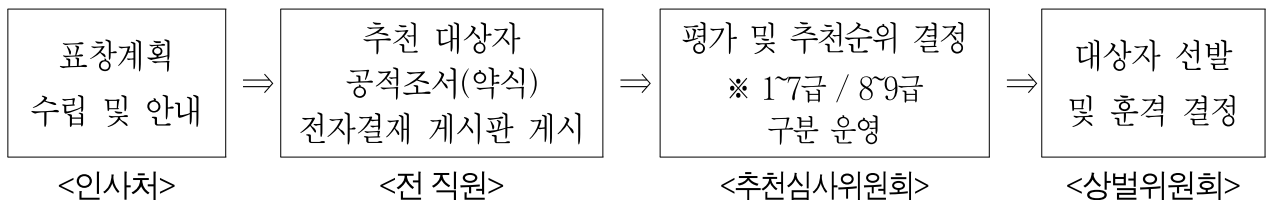
### III 표창 대상자 추천 및 선발

#### □ 분야별 추천 및 선발절차

##### 정기표창

근로자의 날(5월), 창립기념일(9월) 및 연말(12월) 유공직원

##### ○ 일반직(직원 자율추천)



※ 상기 추진절차에 따라 시행하되 제도개선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필요시 관련 절차 개선 검토(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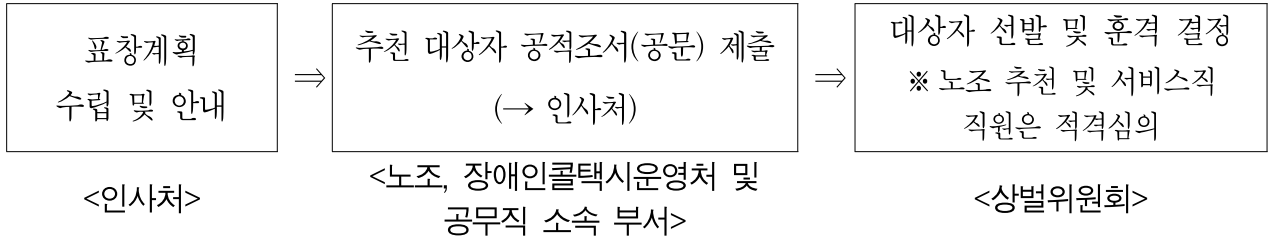
#### <추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 구 성 : 부서별 1인 각 부서장 지정·추천 (→ 인사처) ※ 소속부서 직원 평가 제외
- ▶ 역 할 : 합산평균 고득점 순으로 표창인원의 2배수 상벌위원회 추천
-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등급별 점수					
		S	A	B	C	D	
공적 (70)	난이도	공적달성까지 예상되는 장애요인, 필요한 지식수준 등	15	13	11	9	7
	노력도	공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	20	18	16	14	12
	효과성	내·외부에 실제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20	18	16	14	12
	시민 기여도	시민에게 미치는 효과	15	13	11	9	7
근무태도 (30)	근면, 성실의 정도	15	13	11	9	7	
	팀워크의 정도	15	13	11	9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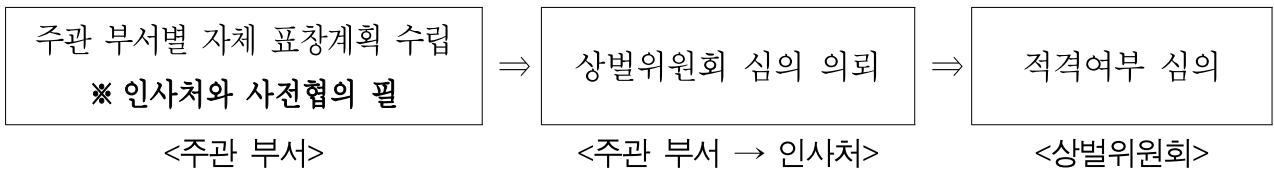
※ 평가등급 : S=매우 뛰어나다, A=뛰어나다, B=보통이다, C=약간 부족하다, D=부족하다

○ 노조 추천(일반직, 서비스직) 및 부서장 추천(서비스직,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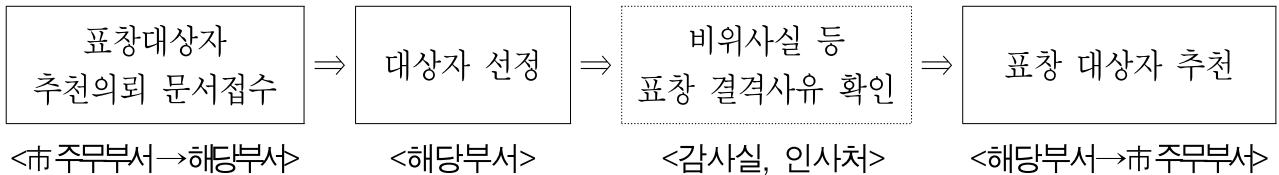


**수시 표창**

○ 타 부서 주관 수시표창



○ 서울시 주관 수시표창 ※ 2016년 市 공무원 표창 계획 참조



**정년퇴직자 및 계약직원 등**

- 정년퇴직 유공직원 표창 : 상벌위원회 적격여부 심의 ※ 10년 이상 근속자 시장표창 추천
- 계약직원 및 협력업체 종사자에 대한 표창
  - 계약직원(전문, 일반, 일용, 단시간, 준공무직)에 대한 표창은 수시표창 절차와 동일
  - 협력업체 종사자는 직원 표창계획인원에 포함하지 않으며, 반드시 이사장 결재를 득하여 수여하되, 해당부서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 ※ 표창호수 인사처 협조

**□ 선발요건 및 제외대상 (결격사유)**

○ 선발요건 : 인사규정 제41조(표창장 수여대상) 해당자

1. 품행이 방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 직원의 모범이 된 자
2.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단발전에 기여한 자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공단발전에 기여한 자
4. 대외적으로 공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5. 기타 공단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

○ 제외대상(결격사유) ※ 기간 산정 시 기준일은 표창 추천일로 함

1.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직위해제 또는 징계(불문경고 포함)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직위 해제 및 견책(불문경고 포함) 6월, 감봉 12월, 정직 18월, 강등(정직 3월 종료일로부터) 24월 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주의·경고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4.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정년퇴직유공 제외

단, 시장 표창의 경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제외 대상에 아래 기준이 포함

- 징계처분 미말소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신설부서 제외), 공단 근속 기간 3년 미만인 자

## IV 행정사항

### □ 표창 부상품 지급 기준

- 정기표창(이사장) :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처)
  - 市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에 대하여 서울시장 표창 부상품 수여 불가
  -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용 등 운용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수시표창 : 주관부서 예산 범위 내 자체 집행. 끝.